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5. 3. 6.
- 회부일자 : 2025. 4. 1.
- 상정일자 : 2024. 4. 7.

2. 제안이유

-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정주요건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신혼부부 주거자금 → (변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지원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
 - (기존) 신혼부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중
 - (확대) 다자녀가구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요건 추가(안 제9조제4항)

- (기존)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추가)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중위소득 180%	7,078,784	9,045,635	10,975,991	12,794,746	14,516,649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기존 신혼부부 외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명 중 ‘신혼부부 주거자금’ 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로 변경
- 안 제2조(정의)에서 ‘다자녀가구’ 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신설 하여 규정하고 ‘주거자금 대출이자’ 에 주택 매입자금 외 전세자금 지원을 추가 규정함.
- 안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다자녀가구’ 를 추가 하여 주거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로 한정하여 다자녀가구와 구분하였음.
- 안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족 조건 >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 되어있고 거주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족 조건 >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4.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이고, 나아가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여 평창군의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 등에서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다자녀가구에 대상 이자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 차. (생략)
3. ~ 7. (생략)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3.~9. (생략)